



#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Website](#) | [Archive](#) | [Contact](#)

##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관세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1. OECD Update

#### Public consultation on Pillar 1 발취

지난 1월 중순에 OECD에서 BEPS 2.0과 관련한 Public consultation을 진행하였고, 다수의 우수 글로벌 기업들이 consultation meeting에서 회사의 입장 및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Public consultation 에서 의견을 발표한 몇몇 회사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 1. Consumer Product Sector

##### (1) Johnson and Johnson

- Johnson and Johnson (이하, J&J)는 성공적인 Pillar One의 도입을 위해 간단성, 확실성 및 지속성이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합니다. 정상가격원칙은 복잡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다국적기업이 계속해서 사용해야 하나 마케팅 및 판매 등 일상적이고 저부가가치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형화된 방법 ("formulaic method")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i) Consumer-facing business ("CFB") 의 기준이 불명확함, (ii) Amount B는 통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용하기에 복잡함, (iii) Amount A는 경제적인 측면에 기반을 두지

삼정 KPMG

이전가격 & 관세본부

1 February 2021

#### KEY CONTACTS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el: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el: 02-2112-0982)



**김상훈 상무**  
(Tel: 02-2112-7939)

않으므로 (예: '적정 배분'에 대한 기준치가 없음) 불확실성을 야기하며 지속적이지 않음.

- 따라서, J&J는 일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Amount A 및 Amount B를 대신하여 'Amount Z'를 'Safe Harbor'로 선택하기를 권고합니다. Amount Z는 여러 단계의 절차로 이루어진 Amount A 및 Amount B 대신 매출이익률 ("Return on Sale" 혹은 "ROS")에 기반합니다.

## (2) Procter and Gamble ("P&G")

- P&G는 과세의 확실성 (Tax certainty) 및 이중과세의 해소를 매우 중요한 요소로 판단합니다. Pillar 1의 결과는 탄탄한 경제 정책에 기반하여야 하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납세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Horizontal equity"). P&G는 각 사업들을 사업 모델별로 분류하는 (예: 전통적인 사업 모델 vs SWOM (Scale without Mass) 사업 모델을 제안합니다.
- Amount A는 SWOM 사업 모델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세액 산출을 위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사업 모델을 대상으로 Amount A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Amount B는 마케팅 및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전통적인 사업의 적절한 세액 산출을 위해 필요합니다. Amount B는 판매활동을 대상으로 정형화되고 비 주관적인 적절 수익률을 수립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P&G는 낮은 수익성을 기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Amount B를 사용하여 정상가격원칙 결과를 수립,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추가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 특정 다국적기업이 전통적 및 SWOM 사업 모델 하에 운영되고 있다면 다국적 기업은 사업부문을 분류하여 각 사업부분별로 Amount A 및 Amount B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또한, P&G는 시장소재지국에 배분되는 이익에 상한선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시장소재지국에 배분되는 이익이 적절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며 ALP에 부합하고, 추가 논쟁 및 이중 계산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Amount A 및 Amount B의 계산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수익을 적절하게 분할하여 사업의 경영 실체 및 근본적인 환경과 일치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김태준 상무**  
(Tel: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el: 02-2112-0277)



**김태주 상무(관세)**  
(Tel: 02-2112-7448)



**김현만 상무(관세)**  
(Tel: 02-2112-7542)

## 2. Platform Business Sector, Cloud Computing Business Sector

### (1) Netflix

- Netflix는 Automated Digital Services (이하, "ADS") 혹은 Consumer-Facing Business (이하, "CFB") 등 OECD에서 발표한 Blueprint의 디지털세 Amount A 적용 대상 산업으로 규정하고 분류하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Netflix는 디지털

컨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소비자에게 자체 제작 혹은 라이선스 하는 컨텐츠 제공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기간별 구독료를 수취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모델을 구축함으로써 Netflix는 ADS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과 같이 소비자의 데이터를 수익원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만든 컨텐츠를 다루는 서비스라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업적 특성으로, Netflix의 사업이 ADS가 아닌 소비자에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CFB로 판단될 여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Netflix는 전통적인 산업 분류에 국한되어 디지털세 Amount A 적용 유무를 판단하기보다 글로벌 매출액 규모(ex. 10억 달러 기준) 등과 같은 개별 회사 규모를 적용 기준으로서 채택하는 것이 규정의 모호성을 탈피할 수 있는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OECD는 디지털세 Amount A 및 Amount B의 산정 방식에서 이중계산(double counting) 및 과세권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정교한 규정을 고안해야 합니다. 이러한 논제와 관련하여, Netflix는 낮은 위험을 부담하는 기업 간의 국제거래에 적용되었던 기존의 이전가격 지침서 상의 'Cost-plus 방식' 및 'Safe harbor'가 Amount B를 산정하는 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Netflix는 기존 OECD에서 제시한 대로 단순히 Amount B에서 기본적인 판매 및 홍보활동에 국한된 'Safe harbor'에서 더 나아가서 모든 낮은 위험을 부담하는 기업(ex. cost plus service provider를 포함한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더 넓은 범위의 'Safe harbor'가 새롭게 고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 Amazon

- Amazon은 OECD Blueprint에서 과세연계점을 바탕으로 글로벌매출이 귀속될 시장소재국(원천지국) 판단 기준으로서 언급하고 있는 매출귀속 기준(Revenue Sourcing)에 대해 일부 동의하지 않습니다. OECD는 Blueprint를 통해 매출귀속 기준으로서 IP address/User location 및 B2B 판매 거래 등의 업종별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들은 모두 적용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IP address/User location 기준은 각 사용자의 IP 주소 등 제공되는 장소 정보의 오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B2B 판매 거래의 경우 Pillar 1에 적용되지 않은 소비기업 등의 개별 소비거래 내역이 현실적으로 모두 공유되기 어려운 관계로 정보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Amazon은 디지털세 Amount A를 결정하기 위해 사업부문 등 구분(Segmentation) 면제 등을 적용하는 데 있어 감사 받은 재무제표를 통해 단순하게 구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며, 동시에 규정의 복잡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Blueprint에서 제시된 'Segmentation hallmarks' 등 세 가지 단계에 걸친 기준 및 방안은 규정의 복잡성을 고조시키며 납세자에게 규정 준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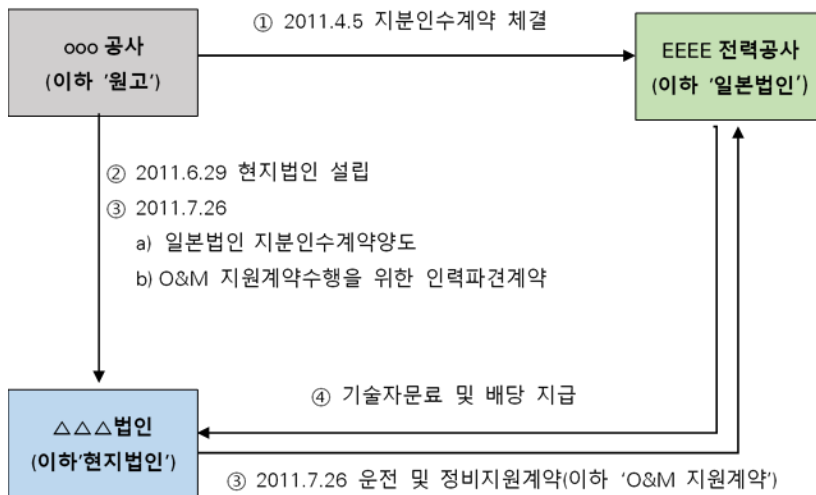
### (3) Microsoft

- Pillar One Blueprint가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Amount B 의 기본 마케팅 & 유통 수익을 정상가격원칙에 따라 포함하자는 제안은 지지하지만 원하는 일정 내에 Amount B 에 대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Amount A에 대한 합의를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Amount A 는 다국적기업이 이미 소재하고 있는 시장에 대해 reallocation 한도를 정해야 하며, OECD 가 합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수익이 있는 경우 초과 수익을 MNE 기업이 소재하는 시장에 reallocate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Microsoft는 기본적인 판매 및 홍보활동에 대한 'safe harbor' 가 추가적으로 고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Microsoft 는 OECD에서 발표한 Blueprint의 Automated Digital Services(이하, "ADS") 디지털세 Amount A 적용 대상 산업으로 규정하고 분류하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백오피스의 생산적 도구이며 Amount A 범위 기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 네트워크 지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객 위치 또는 근접한 곳에서 소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본 투자를 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가 모든 관할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설립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고객 관할국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MNE 기업은 없으므로, 이 점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분 짓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는 실제로 과세대상 관할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고객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할국에서 과세되고 있습니다.

## 2. 국제조세 Update

국제조세 최신 예규/판례 :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울산지방법원 2019 구합 7502 2020.10.29)

- 사실관계



#### - 쟁점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결정

- ① 현지법인은 별도의 사업장 없이 법인 설립을 대행해준 법무법인의 사무실을 소재로 법인등록을 하였고 사실상 인적 및 물적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 ② 원고는 원고의 직원을 모집하여 일본법인에 이사로 파견하였고, 현지법인의 설립과정의 전반적인 모든 과정뿐만 아니라 현지법인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모든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비용 마련 및 지출방안 결정하여 집행하였음
- ③ 이처럼 원고는 현지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통하여 일본법인에 O&M지원계약에 따른 기술자문료 및 배당소득을 해외에 유보시켜 둔 채 배당을 하지 않거나 다른 투자에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의 과세를 연기시키거나 면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결과를 낳았는 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해당 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야함

### 3.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 Update

#### Italy: Budget bill includes proposed APA rollback mechanism, APA application fees

##### 이탈리아: APA 소급적용 및 APA 수수료에 대한 법안 개정

2020년 11월 18일, 이탈리아 Council of Ministers는 2021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법안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이탈리아 의회에서 검토 중이며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기존 APA 규정이 일부 개정됨으로써 이전가격, 고정사업장의 판정, 소득의 배분과 같은 국제조세 이슈와 배당금, 이자 및 로열티에 대한 세무

적 인식 등에 대하여 사전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PA 타결에 따른 효과는 부과제척 기간 내 과거 1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대해서 특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기업은 매출 규모에 따라 아래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만 APA 신청이 가능 해졌습니다.

그룹 매출	APA 수수료
1 억 유로 이하	€10,000
7 억 5 천만 유로 이하	€30,000
7 억 5 천만 유로 초과	€50,000

## Belgium: Transfer pricing audits, new round of information requests

### 벨기에: 이전가격 세무조사 시 추가 정보 요청 사항

최근 다수의 벨기에 납세자들은 벨기에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전담부서로부터 이전가격 다음의 두가지 유형의 정보를 요청 받았습니다.

- 회사의 전반적인 사업 내용, 그룹내 내부 거래 내역, 기능, 위험 및 자산 등과 관련된 33개의 질의사항이 포함된 기존 요청 정보
- 특정 질의사항이 포함된 간단한 추가 정보(예: 그룹내 자금조달 내역 및 원천징수 세 납부 내역 등)

납세자는 상기와 같은 정보 요청에 대해 한달 내에 답변을 제공하여야 하며, 요청 시 해당 기한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정보 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사전 세무조사 회의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자는 세무조사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사전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COVID-19의 영향으로 2020년 사업연도에 대하여 벨기에 기업들의 이전가격 이슈들에 대한 접근방식은 조금 더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OECD는 2020년 12월 18일에 COVID-19가 이전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OECD 지침에서는 과세당국이 과세 위험을 평가하는데 있어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이전가격 거래에 대한 입장을 평가하고, 이전가격 문서화 검토를 통해 납세자가 정상가격원칙 준수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OECD는 각국의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비교가능성 분석
- 손실 및 COVID-19 관련 특정 비용의 배분

- 정부 지원 프로그램
- APA

## Russia: First bilateral APA is concluded

### 러시아: 최초 쌍방 APA 타결

2020년 12월 24일, 러시아 과세당국은 자국의 최초 쌍방 정상가격사전승인(Bilateral Advance Pricing Arrangement, "BAPA")을 핀란드 과세당국과 타결하였습니다. 해당 BAPA의 건은 러시아 소재 납세자가 핀란드에 제품을 수출하는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결정방법 및 가격에 대한 합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핀란드 과세당국은 향후 러시아 소재 납세자와 특수관계법인에 적용될 기본적인 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Turkey: Country-by-country reporting, automatic exchanges under CbC MCAA

### 터키: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협정 체결

2020년 10월 1일, 터키 과세당국의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협정(Country-by-country reporting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CbC MCAA") 승인이 발표되었으며, 2019년 12월 30일부로 터키는 CbC MCAA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CbC MCAA를 체결한 과세당국간 국가별보고서의 자동교환이 이루어지며 CbC MCAA에 필요한 행정과 승인 완료됨에 따라 터키 소재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보고서 비작성 법인은 터키 과세당국에 국가별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터키에 최종 모회사가 소재한 다국적 기업은 국가별보고서를 터키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CbC MCAA가 적용되는 타 관할권 내 대리 제출을 위임할 수 없습니다.

터키 과세당국은 CbC MCAA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사업 구조, 이전가격 및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위험 등을 파악하고 경제적 분석 및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납세의 투명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또한 CbC MCAA는 합의에 따라 양자 또는 다자간 정보교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4. 관세 이슈 Update

###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지능화...입증책임 부여해야"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차단을 위해 다국적 기업에도 과세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2020년 12월 24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입증책임 합리적 배분을 핵심으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되었습니다.

다국적 기업과의 관세소송 패소율은 2016년 18%에서 2019년 41%로 상승했으며, 그 해 패소 등에 따른 환급세액과 국가부담액은 9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과세가격에 대한 입증책임을 관세청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현행 법 체계에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요 내용

개정안에서는 WTO 협정 및 해외 입법 사례와 동일하게 납세자와 관세관청간 입증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거래가격 인정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능동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과세관청은 사전심사·정보제공 등을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디지털 콘텐츠에 관세부과 움직임... "K-콘텐츠 성장 저해 우려"

### 개도국 '디지털 콘텐츠' 관세부과 움직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7일 발간한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논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 보고서에서 한국이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디지털화된 콘텐츠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관세 관행의 영구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디지털 음원, 전자책, 동영상, 비디오게임 등 디지털 제품의 전자적 전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무관세 관행에 처음 합의한 이후 이를 2년마다 갱신하며 지금까지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무관세 관행을 영구화하자는 선진국의 입장에 대해 최근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무관세 관행 폐지를 주장하면서 디지털 콘텐츠 관세부과는 새로운 통상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디지털 콘텐츠 관세부과에 따른 한국의 영향

2019년 기준 한국의 전자적 전송을 통한 수입 규모는 6억9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 예상되는 관세수입은 최대 약 13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같은 해 한국의 콘텐츠 수출은 103억9천만 달러, 소프트웨어 수출은



139억6천만 달러로 전자적 전송을 통한 수입보다 15~20배 이상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이 추가로 얻게 되는 재정수입은 미미한 데 반해 우리 기업들이 콘텐츠 수출 시 직면하게 될 부담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개도국 정부가 세수 확대를 명분으로 무관세 관행을 폐지하고 디지털 콘텐츠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한국의 콘텐츠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국 콘텐츠 산업 성장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WTO 복수국 간 전자상거래 협상과 싱가포르와의 디지털동반자협정에서 무관세 관행의 영구화를 관철해 우리 디지털 콘텐츠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1 Samjong KPMG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https://kpmg.com/socialmedia)



[kpmg.com/app](https://kpmg.com/app)

